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흥국생명보험㈜

2. 조치일 : 2020. 12. 29.

3. 조치내용

대 상	내 용
기 관	개선사항 3건

4. 조치대상사실

가. 개선사항

(1) 고객확인업무 관련 내규 및 운영절차 불합리

① 자금세탁행위등의 방지를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내규인 「자금세탁방지 업무매뉴얼」에 고객확인 업무절차 등을 정하고 있으나 이를 2017.◇월 이후 정비하지 않아

고객확인 업무절차 일부가 현행 법규와 상이하거나 실제 운영내용과 불일치하고, 채널·거래별 고객확인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있음에도 업무담당자별 고객확인 업무절차 변경사항 일부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관련 법규와 실제 업무에 부합하도록 고객확인 업무절차에 관한 내규를 정비하는 한편, 채널·거래별 고객확인 업무절차의 변경사항 등을 관련 내규에 반영하여 운영하시기 바람

② 고객확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확인 및 검증한 고객확인 정보를 전산시스템에 적정하게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하는데도

미성년자에 대한 고객확인 과정에서 친권자 등 대리인에 대해서도 고객확인을 수행하였음에도 이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은 사례가 있고,

제3자를 통한 고객확인 업무 수행의 경우 제3자로부터 고객확인과 관련된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고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 등 고객확인 정보의 전산시스템 입력관련 절차가 미흡하므로

고객확인 업무 수행시 관련 법규에서 정한 고객확인 정보를 필수 입력사항으로 지정하는 등 고객확인 정보의 전산시스템 입력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입력 적정성 여부를 점검·관리하기 위한 세부적인 업무절차(담당부서, 실시주기 등)를 마련하여 운영하시기 바람

③ 내규「자금세탁방지 업무준칙」에 의하면 고위험 고객은 1년, 저위험 고객은 3년을 고객확인 재이행주기로 설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재이행주기가 도래한 고객이 영업점 또는 콜센터에서 제지급 업무시 고객확인을 재이행하도록 하였으나

재이행주기가 도래한 고객에 대한 고객확인 업무를 수행하고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음에 따라 재이행한 고객확인 정보가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적시 활용되지 못한 사례가 있는 등 고객확인 재이행 업무가 일부 불합리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재이행 주기가 도래한 고객에 대한 고객확인 업무 수행시 확인 및 검증한 고객확인 정보의 전산시스템 입력이 의무화되도록 하는 등 고객확인 재이행 업무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운영하시기 바람

(2) 고객 위험평가모형 운영 불합리

내규「자금세탁방지 업무준칙」에 의하면 자금세탁행위등과 관련된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여 고객확인에 활용하기 위해 국가위험, 고객유형, 상품 및 서비스 위험 등을 반영한 위험평가모형을 운영하고 있으나,

2018.◇월～2020.◇월 중 합리적인 사유 없이 단기간 내 고객의 위험도가 변동된 사례가 있는 등 고객 위험평가가 일부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고객 위험평가모형의 위험평가요소 및 중요도 등의 기준을 명확히 정의하는 한편, 동 모형의 적정성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충실히 수행하는 등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3)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기준 운영 불합리

고객의 금융거래를 모니터링하여 금융정보분석원에 의심스러운 거래로 보고하기 위하여 총 ◎개의 의심거래 추출기준(Rule)을 운영하면서,

일부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기준은 회사 실정과 맞지 않아 추출건수 자체가 전혀 없거나 추출 기준과 다른 거래가 전산상 추출되고 있으며, 2019.◇월 실거래 현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부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기준을 개정하였다가 변경된 기준에 따라 추출되는 거래건수가 대폭 증가하게 되자 2020.◇월 개정 이전의 추출기준으로 복원하는 등 추출기준 개정업무가 불합리하게 수행되고 있으므로,

의심거래 추출기준 변경시 추출의 정확성 분석, 추출빈도 시뮬레이션 수행 등 적정성 검증을 강화하고 추출기준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시기 바람